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17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강준현 · 이소영 · 박범계
김현정 · 허 영 · 김승원
김용만 · 김남근 · 이인영
한정애 · 이강일 · 박상혁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폭언·욕설 등을 남발하여 정상적인 고충처리 업무를 현격하게 저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권익위원회의 정상적인 고충민원 대응을 방해한다고 여겨질 만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며, 특이민원으로 분류 및 이송된 이용자의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특이민원을 이송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그렇지만 현행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거나 공익적 목적이 큰 집단적 고충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단 지적임.

이에 행정기관등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민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고충민원 교육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등을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신뢰 및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이민원 처리 근거 명시 및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이용 제한 및
정지 근거 명시(안 제41조의2 신설)

- 1)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중복 제기되거나, 고충민원 신청 수단·방법·분량 등이 통상적·합리적 업무처리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일반적으로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고충민원의 주요내용이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어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이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특이민원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함.

2) 특이민원을 조사 및 처리한 이후 동일인으로부터 접수된 고충민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특이민원의 내용에 욕설, 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고충민원으로 보기 어렵거나, 신청인이 타인을 괴롭힐 목적 또는 공무를 방해할 의도가 명백한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한 경우 등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특이민원으로 분류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이송된 특이민원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권익위원회로의 특이민원 이송 및 특이민원 대응 공직자 보호를 위한 의견 제출(안 제43조의2 신설)

1) 관계 행정기관등이 특이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권익위원회에 처리를 요청하면 권익위원회가 이송받아 처리하도록 함.

2) 특이민원 대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유로 담당 공직자가 징계를 받게 되거나, 특이민원과 관련한 고소 등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담당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

회가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집단민원의 조정 등(안 제45조, 제45조의2 신설)

- 1)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권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3)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관 집단민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현황 파악 및 점검, 집단민원 관련 교육 및 훈련, 관계 기관 협의 등을 담당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함.

라. 고충민원 처리 관련 교육 등(안 제81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고충민원 발생 예방,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 및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평가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특이민원의 분류 및 조사 등) ①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에는 특이민원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중복 제기된 경우
2. 고충민원 신청의 수단·방법이나 분량 등이 통상적·합리적 업무 처리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3. 고충민원의 주요내용이 욕설, 헐박, 모욕, 성희롱 등이어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특이민원으로 분류되었거나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특이민원에 관하여 제41조에 따라 필요

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이민원으로 조사 및 처리한 이후 동일인으로부터 접수된 고충민원이 종전 특이민원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고충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 타인을 괴롭힐 목적 또는 공무를 방해할 의도가 명백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물리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을 반복하는 고충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자가 참여포털을 통하여 제기한 고충민원이 특이민원으로 분류되었거나 참여포털 이용자가 참여포털을 통하여 제기한 고충민원이 제43조의2에 따라 권익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이용자의 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를 “제41조 및 제41조의2”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특이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이송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특이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이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특이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그 특이민원의 처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 권익위원회는 그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이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에서 그 특이민원의 처리를 담당하였던 사람과 민원인 간에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권익위원회는 그에 관한 수사 또는 쟁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확인사실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특이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에서 그 특이민원의 처리를 담당하였던 자가 권익위원회에 업무 변경, 부서 이동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권익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인사에 관한 조치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다수인”을 “제39조에 따라 신청되거나 제43조제5항에

따라 이송된 고충민원 중 다수인”으로, “고충민원”을 “사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집단민원의 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이하 “집단민원”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민원인과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의 조정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2.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권

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3.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권익위원회의 조정 제안에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직자들 중에서 집단민원(특이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접수 및 처리현황 파악 및 점검, 집단민원 관련 교육 및 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집단민원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고충민원 발생의 예방, 고충민원 처리 역량의 강화 및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평가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1조의2(특이민원의 분류 및 조사 등) ①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에는 특이민원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u> <u>1. 고충민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중복 제기된 경우</u> <u>2. 고충민원 신청의 수단·방법이나 분량 등이 통상적·합리적 업무처리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u> <u>3. 고충민원의 주요내용이 욕설, 헐박, 모욕, 성희롱 등이어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u> <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u>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특이민원으로 분류되었거나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특이민원에 관하여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이민원으로 조사 및 처리한 이후 동일인으로부터 접수된 고충민원이 종전 특이민원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고충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 타인을 괴롭힐 목적 또는 공무를 방해할 의도가 명백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물리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신설>

을 반복하는 고충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자가 참여포털을 통하여 제기한 고충민원이 특이민원으로 분류되었거나 참여포털 이용자가 참여포털을 통하여 제기한 고충민원이 제43조의2에 따라 권익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이용자의 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제41조 및 제41조의2-----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특이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이송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특이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이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특이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그 특이민원의 처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 권익위원회는 그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이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에서 그 특이민원의 처리를 담당하였던 사람과 민원인 간에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권익위원회는 그에 관한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수사 또는 재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확인사실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특이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에서 그 특이민원의 처리를 담당하였던 자가 권익위원회에 업무 변경, 부서 이동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권익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인사에 관한 조치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 제39조에 따라 신청되거나 제43조제5항에 따라 이송된 고충민원 중 다수인----- 사안-----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고충민원의 원인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신설>

이 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제45조의2(집단민원의 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이하 “집단민원”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민원인과 집단민
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
이 권익위원회의 조정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2.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
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
청하는 경우

3.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
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권익위
원회의 조정 제안에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
직자들 중에서 집단민원(특이민
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접수 및 처리현황 파악
및 점검, 집단민원 관련 교육 및
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
를 담당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u>⑤ 그 밖에 집단민원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고충민원 발생의 예방, 고충민원 처리 역량의 강화 및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평가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	---